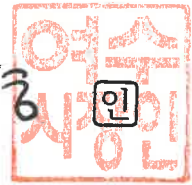


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통합재정
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5 월 8 일

여 수 시 장 2025. 5. 8



여수시 조례 제2194호

붙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
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194호

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금융상품으로”를 “금융상품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, 위촉직 위원(“이하 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”

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분의 1”을 “2분의 1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회계 또는 기금의 업무담당 국장
제9조제4항 중 “통합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”를
“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2025년 6월 30일”을 “2030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)</p> <p>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,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<u>금융상품으로</u>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기금출납원 : 통합기금업무 담당 <u>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</u></p>	<p>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금</u> <u>용상품으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 <u>팀장</u></p>
<p>제6조(통합제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운용업무 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</p>	<p>제6조(통합제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운용업무 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</p>
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,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1. 개별 기금의 조례로 지정한 기금운용관 중 통합기금에 위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운용관

2. (생략)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

(생략)

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

⑤ (생략)

제10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(“이하 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.

⑤-----

----- 2분의 1 -----.

1. 통합기금에 위탁한 자금이 있는 회계 또는 기금의 업무담당 국장

2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
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존속기한) -----
----- 2030년 6월 30일-----.